

등록번호	안전치수과-12670
등록일자	2015.6.22.
결재일자	2015.6.22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하수팀장	안전치수과장	안전건설국장
이병준	소철호	허병호	전결 06/22 박희균
협조	치수팀장 지하수팀장	박종하 김덕춘	

2015년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시행



안 전 건 설 국
안 전 치 수 과

2015년도 상반기 정기하자검사 시행



하자담보 책임기간중인 시설물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내구연한 확보 및 기능유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I 관련 근거

■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69조

-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하여야 하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따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

II 검사 개요

■ 하자검사 기간 : 2015. 06. 23. ~ 2015. 06. 30. (8일간)

■ 하자검사 대상 : 2008. 12 .23. ~ 현재까지 (총33건)

- 하수팀사업 : 17건
- 치수팀사업 : 5건
- 지하수팀사업 : 11건

■ 검사자 편성 (붙임참조)

- 단위사업공사 : 동담당자 등 기타 지정자
- 연간단가계약 공사 : 공사감독 및 기타 지정자

※ 분야별 2인이상 복수 현장 육안검사

III

세부시행방법

■ 검사방법

- 검사자 2인 이상 복수 현장 육안검사
- 하자검사조서(붙임#2) 작성
- ※ 2015년도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완료되는 『을지로5가274~6가간 하수암거 보수보강공사(3차)』에 대하여는 1차 정밀 육안검사 후 이상징후 발견 시 관계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정밀검사 자문 시행

■ 하자발생부분 처리

- 하자발생부분에 대하여 기관장 명의로 시공자에게 직접 하자보수 지시하여 하자기간 만료로 사업비가 재투입되어 재정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
- 하자보수 요청에 불응할 경우 예치된 하자보수 보증금 사용 보수토록 하되, 보증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확보토록 재무과 협조

IV

기타행정사항

- 검사자는 하자검사조서를 2015. 07. 03일까지 제출
- 전문기술자 동반 하자검사가 필요한 경우 전문기술자 검사결과 첨부 제출

붙임 : 1. 하자검사 대상사업 현황 1부.
2. 하자검사조서(양식) 1부. 끝.